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직종:직업훈련교사

지원자 성명	한글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 1. 주요 경력사항

근 무 처 (부서)	근무기간	근무월수 (월일수)	직위 (급)	주요업무실적
1. 00 기업 (00팀)	20XX.X.X. ~ 20XX.X.XX.	XX개월	대리	

##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1. 00자격증	XXXXXX	2009. 3. 28.
2.		
3.		

## 3. 수상 실적

내 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1. 00 경진대회	2009. 3. 28.	
2.		

## 4. 기타 실적, 능력 등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장애 정도	장애인 등록번호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5. 자기소개서(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실적위주(구체적인 기록), 장애인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1, 줄 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 1.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기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2. 자격증 보유 현황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자격증 취득이 확인되어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 3. 수상 실적

① 사내대회 수상 실적 등 증빙이 불가능한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4. 기타 실적, 능력 등

① 기타 실적, 능력 등은 반드시 A4용지 1/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 5. 자기소개서

①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를 상세히 기재할 것

②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 6. 기타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① 아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장애인 여부

①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여부

①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로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